

광주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5197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현재

변론 종결2022. 8. 30.

판결 선고2022.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수익권을 양도하고, C 주식회사(변경 전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위 수익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7. 11. 14. B의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를 아래와 같이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2017. 11. 14.	F	95,000,000원	<기운> 일반자금대출	2022. 11. 14.	E은행
---------------	---	-------------	-------------	---------------	-----

2) B은 2020. 8. 12.경 소외 G조합에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 불량 규제 중이었고, 결국 2020. 11. 13. 타행 연금연체 및 사고통지로 인하여 B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21. 5. 12. E은행에게 위 보증관련 채무원리금 77,185,854원(= 원금 75,735,334원 + 이자 1,450,520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하여 79,611,514원(= 대위변제금 77,185,854원 + 대지급금 1,876,340원 + 추가보증료 549,32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C 및 1순위 우선수익자 G조합 사이에 2018. 6. 11.자, 2018. 7. 26.자에 각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최초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위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2019. 12. 18.자 부동산담보신탁(1차) 변경 계약에 기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우선수익권 한도금액 500,000,000원으로 각 하는 부동산담보신탁(1차) 변경계약(이하 '담보신탁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2. 20.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신탁원부에 기재하여 신탁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2)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2021. 5. 12.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비록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신탁재산우선수익권의 1차 변경계약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한 시점(2019. 12. 18.) 이전인 2017. 11. 14. 구상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2019. 12. 18.로부터 무려 11개월 후인 2020. 11. 1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해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원고가 2021. 5. 12.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B의 무자력 여부에 대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여러 모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소연

별지